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통상부의 전시시설 지진피해 최소화시책 마련〉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01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업통상부의 전시시설 지진피해 최소화시책 마련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8.
3. 회부연월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 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업통상부의 전시시설 지진피해 최소화시책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시시설(참고자료 참조)은 모두 200m² 이상의 시설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표 2]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계 법령상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 32. (생략)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생략) 2. <u>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 9. (생략)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계기준(KDS)을 유형별로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 중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기준²⁾,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KDS 32 17 10), 산업환경시설 내진설계기준(KDS 33 17 10) 등도 고시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시시설은 전시부스, 대형 스크린 등이 임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전시행사 종료시 제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내진설계기준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내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시시설은 동일 시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이용하므로 그 특성상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규모 및 대외 신뢰도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전시시설에 대해 별도로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제외)

(2)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일부 전시시설 운영기관³⁾은 내진설계의 중요성 및 동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 관련 사항을 중복적으로 평가·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별도 기준 및 시책이 추가되어 중복규제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시시설이 현행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령 및 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고,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은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⁴⁾을 감안하면 기존 법체계 내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엑스코

4)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기준 - 1.2. 적용범위

(2)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국내 전시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관	전시면적(m ²)
1	Coex	서울 강남	(주)코엑스	36,007
2	SETEC	서울 강남	서울경제진흥원	7,948
3	EXCO	대구 북구	(주)엑스코	36,553
4	BEXCO	부산 해운대	(주)벅스코	46,380
5	aT Center	서울 서초	(주)에이플	8,047
6	ICC JEJU	제주 서귀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2,345
7	KINTEX	경기 고양	(주)킨텍스	108,011
8	KDJ Center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12,027
9	CECO	경남 창원	경상남도관광재단	9,375
10	DCC	대전 유성	대전관광공사	12,670
11	Songdo ConvensiA	인천 연수	인천관광공사	17,021
12	GUMICO	경북 구미	구미시청	3,402
13	GSCO	전북 군산	김대중컨벤션센터	3,697
14	HICO	경북 경주	경주화백컨벤션뷰로	2,273
15	SCC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7,877
16	Suwon Messe	경기 수원	(주)메세이상	9,080
17	UECO	울산 울주	울산문화관광재단	7,776
18	COEX 마곡	서울 강서	(주)코엑스	7,452
19	OSCO	충북 청주	(주)메세이상	10,031